

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11,351,532	18,340,546
일반회계	587,177,692	17,615,331
특별회계	24,173,840	725,215
기타특별회계	24,173,840	725,215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711,467	51,344
주차장운영특별회계	22,462,373	673,871

제 2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"채무부담행위사업"은 없다

제 4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비비는 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2020년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도 상호 이용할 수 있다.